


 축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98호, 2019. 5. 31. 일부개정]

### ◆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독 및 방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주변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자 휴대 축산물의 미신고 반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현행 제12조의2제2항 및 제6항 삭제, 제12조의2제3항 및 제5항)

- (중전) 가축의 살처분 등에 참여한 사람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면 가축 살처분 등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문가 상담치료 후에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50퍼센트만 지원

- (개정) 치료 신청 기한을 없애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비용도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

#### 나.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 (중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개정) 가축평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

#### 다.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

#### 라.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에 대한 제재 강화

- (중전) 1회 위반 시 10만 원, 2회 위반 시 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개정)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7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법제처 제공〉